

제 376 호

1973.6.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 6090

시보

차 례

◎ 규 칙		
제 1305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제 1306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시공운영규칙중개정규칙	10
제 1307 호	서울특별시단체감독규칙중개정규칙	12
제 1308 호	서울특별시의무축탁규정중개정규칙	12
◎ 고 시		
제 8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및지적변경승인	13
제 89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지정번호 종류별 분류부여	14
◎ 사 령		1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양택식
197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05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30세대이상의"를
삭제한다.

제 3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 2 (공용급수전의폐전) 시장은
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공용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
의 이용자의 상당수가 전용급수전을
설치하였거나 다른 공용급수전의 이
용이 가능함으로서 그 이용자가 전
조 제 1 항 제 1 호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다만 전용급수전을 설치
할 수 없거나 다른 공용급수전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영세민
이 2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내지 제 10 중 "시장"을 "관
할수도 사업소장"으로 하고 제 8 조
제 3 항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다음에 "시장의 승인
을 얻어"를 삽입한다.

제 13 조 제 4 항중 "한지계 (약 700)
당 5원"을 "한지계 (500) 당 3원"
으로 한다.

제 16 조제 2 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조례 제 30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업종 적용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목욕탕 (갑종)
2. 영업용 제 1 종
3. 공업용
4. 영업용 제 2 종
5. 목욕탕 (을종)
6. 가 사 용
7. 특 수 용
8. 공설 공용

제 19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3 항중 "서식제 7 호" 를 "서식제 5 호" 로 한다.
 ㉔ 급수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시금고는 별지 제 3 호 서식중 시금고 납부서에 영수인을 날인하여 납부처에게 교부하고 수도사업소장은 별지제 4 호 서식의 동화제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급수사용자들을 방문

하고 수납하는 때에는 별지제 3 호 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별표 제 1 호와 제 3 호서식 및 제 4 호서식을 별지와같이하고 제 5 호서식과 제 6 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제 7 호 서식을 제 5 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1 호

급 수 종 별 구 분 표

- 가사용 : 시민주거용급수, 다만 10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단일 양수기로 제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조례별표제 2 호의 가사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경우 총량을 사용세대별로 산출한 평균 사용량의 1.5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 영업용 제 1 종 :

호	업	종	적	요
1	극	장		
2	호	델	갑 류 , 을 류	
3	여	관	갑류 , 을류 , 병류	
4	은	행 본 지 점		
5	식	당 음식 점		
6	병	원		
7	요	정 요 리 점	한식, 일식, 중국식, 양식요리, 카바레, 빵, 클럽, 회관등	
8	백	화 점		
9	인	쇄 소	음셀시설이 있는 업체	

호	업 종	적 요	
10	다 방 , 빙 과 점	세 탁 , 기 계 시 설 을 보 유 한 입 체	
11	한 증 막		
12	세 탁 소		
13	이 발 관		
14	주 유 소 및 주 차 장		
15	꽃 집 및 식 목 업		
16	사 설 학 술 강 습 소 또는 학 원		
17	사 립 대 학 부 속 병 원		
18	보 링 장		
19	예 식 장		
20	세 차 장		
21	빌 딩		
22	기 타		이 규 칩 급 수 종 별 구 분 포 각 항 에 명 시 된 업 체 에 해 당 하 지 아 니 하 는 용 도 가 주 택 전 용 이 아 닌 4 층 이 상 의 건 축 물 (지 하 층 포 함) 1 . 위 에 제 기 한 업 체 이 의 영 업 용 도 나 종 사 원 및 내 객 용 으 로 월 60 ㎡ 정 도 급 수 가 소 요 된 다 고 인 정 되 는 얼 소 에 대 한 급 수 2 . 영 업 용 제 2 종 에 해 당 하 는 2 개 이 상 의 업 체 가 단 일 양 수 기 를 경 유 하 여 급 수 를 사 용 할 때

3 . 영 업 용 제 2 종 :

호	업 종	적 요
1	세 탁 소	영 업 용 1 종 에 해 당 되 지 아 니 하 는 일 체 의 세 탁 소 의 원 , 치 과 의 원 , 한 의 원
2	의 원	
3	당 구 장	
4	주 점	선 술 집 및 이 와 유 사 한 소 규 모 주 류 판 매 업 영 업 용 제 1 종 에 해 당 되 지 아 니 하 는 일 체 의 인 쇄 소
5	인 쇄 소	
6	간 이 음 식 점	
		리 면 , 국 수 , 빵 류 등 간 이 식 사

호	업 종	적 요
7	정 육 점	
8	여인숙 및 하숙업	
9	미 장 원	
10	사 무 실	
11	실내스케이트장 및 수영장	
12	기 원	
13	철물점, 목재상 및 활역상	
14	기 타	영업 제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및 공업용 급수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체로서 영업용도 또는 종사원용으로 급수를 사용하는 업체

4. 공업용 : 제도가공업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월평균 200㎡ 이상 사용하는 다음에 제기하는 업소에 대한 급수

호	업 종	적 요
1	양 조 업	
2	제 분 업	
3	제 당 업	
4	방직 및 직물가공업	
5	제 빙 업	
6	기계기구제조공업	

7	청양음료제조업	
8	유지공업	
9	주물및제철공업	
10	제지공업	
11	제과업	
12	고무제품제조업	
13	섬유공업	
14	제약업	
15	식료품제조가공업	제과, 제빵, 엿류, 빙과, 유제품, 식육어육제품 냉동업, 통조림, 병조림, 인조뼈터, 조미식품, 두부, 당면, 식용유

5. 목욕탕(잡종) : 1) 대중목욕탕이외에 독탕, 가족탕, 터키탕, 휴게실, 사우나 (휴게실과 겸영하지 않은 것은 제외)의 시설의 일부및전부를 설비한 영업소에 대한 급수
2) 숙박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욕실 설비로서 숙박업법에 의한 여관및호텔영업을 하는 업체는 제외하되 여관및호텔의 객실내목욕시설을 독방 또는 가족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목욕탕 잡종으로 한다.

6. 목욕탕(을종) : 대중탕 시설만 있는 영업소에 대한 급수

7. 공설공방 : 조배 제4조제2호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급수전에의한급수

8. 특수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당, 사회구호단체, 병영, 학교, 철도관영 대학부속병원및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등에 대한 급수

9. 사설소화전 : 당해급수시설에 설치된 양수기를 경유하지않고 따로 시설한 소화전

10. 일시급수및공사용급수 :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가설된 급수시설에 의한 급수 또는 전평 33 ㎡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한 급수

(전면)

NO. 수 금 표 수도요금	NO. 영 수 증 수도요금																		
주소. 성명 1973년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width: 50px;">납기</td> <td style="width: 50px;">사 용 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m</td> </tr> </table>	납기	사 용 량	월	m	주소. 성명 1973년도 귀하 월 납기														
납기	사 용 량																		
월	m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수도번호</td> <td style="width: 10%;">종별</td> <td style="width: 15%;">금수 사용료</td> <td style="width: 10%;">손 료</td> <td style="width: 10%;">합 계 액</td> <td style="width: 40%;">(정대번호) NO.</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d></td> </tr> </table>	수도번호	종별	금수 사용료	손 료	합 계 액	(정대번호) NO.			원	원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수도번호</td> <td style="width: 10%;">종별</td> <td style="width: 75%;">납기내납부액</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r> </table>	수도번호	종별	납기내납부액			원
수도번호	종별	금수 사용료	손 료	합 계 액	(정대번호) NO.														
		원	원	원															
수도번호	종별	납기내납부액																	
		원																	
가산금 원 납기 후 원 납부액	납 기 후 원 납 부 액																		
송달 고 73. . . 확인 독 73. . .	장수일자 1973. . . 장수 원 (인)																		
위 금액 영수함. (영수일은 이면에 복사로 나옵니다) 구수도사업소분입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전면계속)

(용표복) 민원신고 센 타	(승법복) 1. 가 사 용 용 2. 영 업 용 1 중 용 3. 영 업 용 2 중 용 4. 공 공 업 용 5. 목 목 탕 감 중 용 6. 목 목 탕 을 중 용 7. 공 공 실 공 용 용 8. 특 수 수 용 용	NO. 수 도 요 금 시 금 고 납 부 서												
※ 제량기는 이렇게 봅니다. [최기 계량지침수는 318입니다] ※수도사용량계산은 이렇게합니다. [금일지침수 - 전일지침수 = 금일 사용량]		주소. 성명 1973년도 귀하 납 기 사 용 량 월												
계량기 검침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주십시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수도번호</td> <td style="width: 10%;">종별</td> <td style="width: 15%;">금수 사용료</td> <td style="width: 10%;">손 료</td> <td style="width: 10%;">합 계 액</td> <td style="width: 40%;">(정대번호) NO.</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td> <td></td> </tr> </table>	수도번호	종별	금수 사용료	손 료	합 계 액	(정대번호) NO.			원	원	원	
수도번호	종별	금수 사용료	손 료	합 계 액	(정대번호) NO.									
		원	원	원										
위 금액 영수함. 한국상업은행 검		위 금액 영수함. 이 영수증은 은행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위 금액 영수함.		취급자 (인) 수입일부인 (인)												
은행의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16-8 제 376 호 시 표 1973.6.13

1691

(후면)

수도요금

고지서 및 납입필 통지서

구분 용도별	1전1개월기본요금		조화사용료		비고
	기본수량(㎥)	기본요금(원)	사용량구분(㎥)	㎥당단가(원)	
가사용	10	150	11-20 21-30 31-40 41 이상	15 20 30 40	
1층	30	1,350	31-200 201-1,000 1,001 이상	70 90 120	
2층	30	900	1㎥	35	
공입용	200	6,000	1㎥	35	
감중	600	48,000	601-1,000 1,001-3,000 3,001 이상	100 160 200	
블록	600	12,000	1㎥	25	
공설용	100	1,000	1㎥	10	
시설용	100	1,000	1㎥	10	

남부지주소, 성명

1973년도

남기	사용량
월	㎥

귀하

수도번호	종별	급수 사용료	손료	합계액	(정리번호)
		원	원	원	No.

납부장소 ①관할수도사업소 ②한국상업은행본. 지점

납부기한 납기월 말일

위와같이 고지 합니다.

1973년 월 1일

구수도사업소장

은행일부인

※ 가정용은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하여 두 달분을 일시에 납부하십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더 납부하시게 됩니다.

(후면계속)

원 부 수도요금 매월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소, 성명

1973년도

수도번호	종별	납부액
		원

한국상업은행 점

1973. . . 영수

수입 일부인

이 영수증은 5년간 잘 보관하시기 바

둘러사함

376

376

1973.6.13 16-9

<p>부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공사시 공구역은 관악구수도사업소와 동부구 수도사업소가 설치된 날로부터 적용한다.</p> <p>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재적재장 및 시공기술자 1인이상을 보완조건으로 허가된 상수도시공업자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조건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③(동전)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되어 있는 상수도시공영업허가의 시공구역은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의 해당 시공구역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며 허가사항중 변경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칙 1항 단서 의 적용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서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환서받아야 한다.</p>
<p>별표 제1호</p> <p>시 공 영 업 허 가 기 준 표</p>	

인		개
기 술 능 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신청인이 시공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자 본 금	신 규 기 본 금 1,000,000원 이상	은행예치액 300,000원 이상
	기 본 금 500,000원 이상 최근 2년간 영업세납부액 연평균 5,000원 이상	은행예치액 200,000원 이상
공 사 용 시 설	사무실 3평이상 전화기 1대이상 천공기 1대이상 오스타 2대이상 (50% 이하)	

서울특별시단체감독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6월 12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307 호

서울특별시단체감독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단체감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매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 편성제출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음에 제 8 조의 2 와 제 8 조의 3 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8 조의 2 (세입세출의 정의와 회계년도) ①회계년도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②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8 조의 3 (결산보고) 시장은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사무촉탁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6월 12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308 호

서울특별시사무촉탁규정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촉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무촉탁규정”을 “서울특별시임시직의사규정”으로 하고 제 1 조의 제목 “(의무촉탁)”을 “(정의)”로 하고 동조중 “의무촉탁이라 함은”을 “임시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라 함은”으로 한다. 제 5 조 내지 제 13 조와 별표중 “의무촉탁”을 “의사”로 한다.

제 10 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의 2 중 “사” 다음에 “아”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시립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월 5,000 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다. 경력중 을경력란에

“보전소”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호(69.1.18)

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지적변경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12조와 제13조 및 건설부고시제123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5. 3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소로 일부변경 및 신설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101	(M) 8	(M) 172	천호동 127-1	천 호동 34-1	
변경	"	2	101	8	216	천호동 227-5	천 호동 34-1	노 선 연 장
기정	"	2	106	8	153	천호동 258	천 호동 151	
변경	"	2	106	8	187	천호동 258	천 호동 522	노 선 연 장
기정	"	3	102	6	310	천호동 854	천 호동 69-9	
변경	"	3	7	6	126	천호동 854	천 호동 77	노 선 축 소
기정	"	3	103	6	273	천호동 21-1	천 호동 21-3	
변경	"	3	103	6	217	천호동 21-1	천 호동 74	노 선 축 소
기정	"	3	104	6	225	천호동 76	천 호동 21-3	
변경	"	3	104	6	181	천호동 76	천 호동산 19-2	노 선 축 소
기정	"	3	106	6	451	천호동 283-2	천 호동 249	
변경	"	3	106	6	467	천호동 283-2	천 호동 147	노선연장 및 위치 일부 변경
신설	"	3	1	6	102	천호동 226-13	천 호동 226-3	

별첨 도면포시와 같은 도면생략(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89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번호종류별분류부여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번호가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분류하여 부여되었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1973 년 6 월 13 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다 음 —

당초지정번호	종류별 (분류)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년월일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제 1 호	서울특별시 지방유형 문화재 제 1 호	장충단비	69.9.18
" 제 2 호	" 제 2 호	봉황각	"
" 제 3 호	" 제 3 호	양관	"
" 제 4 호	" 제 4 호	낙성대	72.5.25
" 제 5 호	" 제 5 호	정업원구기	"
" 제 6 호	" 제 6 호	용양봉저점	"
" 제 7 호	" 제 7 호	성제묘	"
" 제 8 호	" 제 8 호	사육신묘	"
" 제 9 호	" 제 9 호	종친부	"
" 제 10 호	" 제 10 호	한우물	72.8.30
" 제 11 호	" 제 11 호	지덕사부묘소	"
" 제 12 호	" 제 12 호	청권사부묘소	"
" 제 13 호	" 제 13 호	동십각각	"
" 제 14 호	" 제 14 호	인조별서유기비	"
" 제 16 호	" 제 15 호	선농단	73.1.26
" 제 15 호	서울특별시 지방민속자료 제 1 호	관성묘	72.8.30
" 제 19 호	" 제 2 호	서빙고부군망	73.1.26
" 제 20 호	" 제 3 호	평창동보현산신각	"
" 제 21 호	" 제 4 호	선바위	"
" 제 17 호	서울특별시 지방기념물 제 1 호	잠실리방나무	"
" 제 18 호	" 제 2 호	화양동느티나무	"
계	21 점		

사. 명

◎ 1973.6.11.

안 전 과 지방토목기사보 신 전 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책에 처함.

지 하 철 전 설 본 부 지방토목기사보 지 도 영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책에 처함.

서 대 문 수 도 사 업 소 지방토목기사보 지 석 팔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

구 획 정 리 1 과 지 방 토 목 기 원 남 광 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책에 처함.

구 획 정 리 1 과 지 방 토 목 기 원 박 헌 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 처함.

중 구 보 건 소 지 방 약 무 기 원 보 최 세 탁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 처함.

◎ 1973.6.13.

성 동 구 지 방 행 정 서 기 이 훈 주

종 로 구 보 건 소 근 무 를 명 함.

마 포 구 보 건 소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오 일 규

종 로 구 근 무 를 명 함.

아 동 병 원 지 방 행 정 주 사 보 김 응 복

성 동 구 근 무 를 명 함.

양 노 원 지 방 행 정 서 기 보 김 진 모

성 북 구 수 도 사 업 소 근 무 를 명 함.

성 북 구 수 도 사 업 소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전 주 영

기 획 과 근 무 를 명 함.

중 구 지 방 행 정 주 사 전 학 성

새 마 을 사 회 복 지 관 근 무 를 명 함.

중 구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유 은 식

동 대 문 구 근 무 를 명 함.

영 등 포 구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오 원 택

종 로 구 근 무 를 명 함.

영 등 포 구 지 방 행 정 서 기 임 무 환

마 포 구 보 건 소 근 무 를 명 함.

마 포 구 지 방 행 정 서 기 정 광 탕

전 남 광 주 시 전 출 을 명 함.

<p>전남광주시 지방행정서기 김병호</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p>5호봉을 급함.</p> <p>마포구 근무를 명함.</p>	<p>마포구 지방지적기원보 장점섭</p> <p>구획정리 제2과 파견</p> <p>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적기원보 이상헌</p> <p>마포구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